

조세재정 Brief

K I P F I S S U E P A P E R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김문정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 / moonkim@kipf.re.kr
정다운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 dwjung@kipf.re.kr

- 01 들어가는 글
 - 02 소득세제 검토
 - 03 사회보험 제도
 - 04 조세·재정지원 제도
 - 05 소득파악 인프라
 - 06 나가는 글
- 참고문헌

2023. 12. 26.

No.160



kipf 한국조세재정연구원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요약

-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근로소득이나 진성 사업소득과 (연간기준)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가 일반적임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관련된 과세·징수·지원 제도, 소득파악 인프라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정책 함의점을 도출함
 - (소득파악 인프라) △비원천징수 방식 과세자료의 질적·양적 개선, △현행 업종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원 등을 위해 인적용역 업종 세분화 지속 추진, △개인별 취업소득 합산체계 구축
 - (소득세) △과세당국 수집자료에 기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비 파악 추진, △인적용역 업종 특성을 반영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개선 등을 통해 경비율 제도를 개선, △인적용역형 기타소득 시 업종정보 신고 필요
 - (사회보험)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 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같은 ‘부수입’을 일정한 기준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지원정책)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단일 취업형태로 간주하기보다는 개인 및 가구별 합산소득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

※ 본 조세재정브리프는 “김문정·정다운,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발간예정)” 중 일부 내용을 발췌·요약한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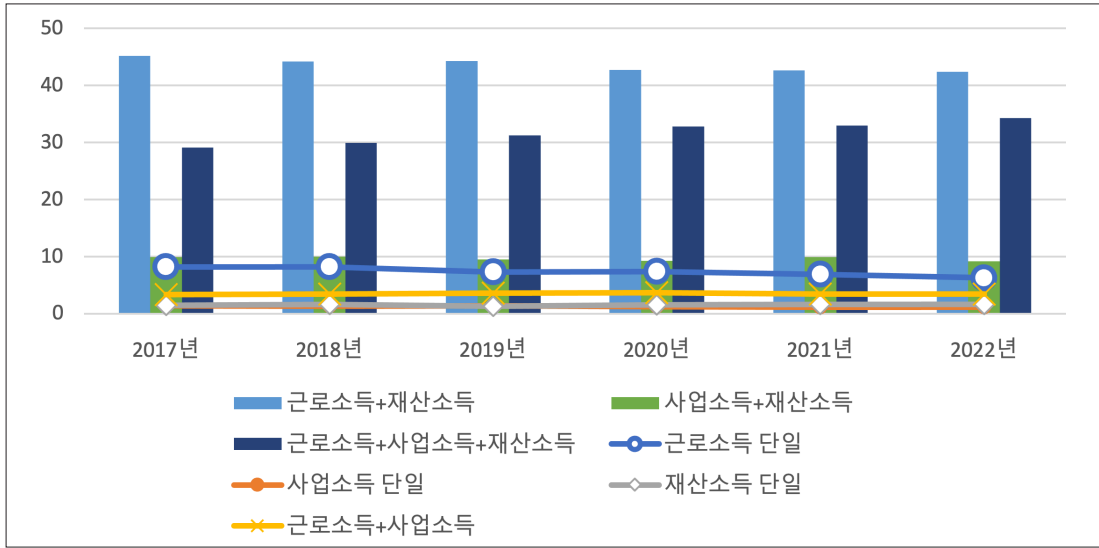
01 들어가는 글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란, ‘고용관계 없이 독립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소득’을 의미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혹은 인적용역 사업자는 그러한 사업소득을 발생하는 자를 의미함¹⁾
- 단독으로 근로소득을 발생할 확률은 낮아지고, 사업소득과 병행할 확률이 높아지는바([그림 1] 참고), 기존 임금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과세·부과·지원 제도 검토의 필요성이 대두됨
 - 본 연구보고서의 연구진은 이러한 경향성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보편화’ 현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판단함
- 2020년 12월 발표된 「전 국민 로드맵」에 따라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이 2021년 7월에 도입된 것으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정부의 공식적인 과세·부과·지원의 영역에 편입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음²⁾
- 본 연구에서는 인적용역 사업자의 소득파악 현황, 소득세, 사회보험 제도, 조세·재정 지원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1)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와 유사한 개념이나, 상호 포함관계가 성립하지 않음. 예를 들어, 화물차주의 경우 「고용보험법」상 노무제공자에 해당하지만, 세법상 사업자등록 자영자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업종코드가 적용되지 않음

2) 인적용역 사업자는 근로자와 자영자 중간의 회색지대에 위치함에 따라 근로자(예: 구직급여)와 자영자(예: 소상공인 지원)에 적용되는 지원의 대상에서 배제되어 왔음

그림 1 복수 유형 소득 비중의 증가



자료: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2017~2022년 원자료를 기반으로 저자 작성

02 소득세제 검토

1. 인적용역 사업소득 관련 소득 세제 개관

- 인적용역 사업자란, 물적 시설을 갖추거나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고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의미함
 - 「부가가치세법」상 ‘물적 시설’이라 함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임차 포함)를 의미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원천징수이행의무가 있는 소득 지급자에 의하여 소득세가 원천징수됨(「소득세법」 제 127조 제1항 제3호 및 동 법 시행령 제184조 제1항)
- 거주자의 인적용역 소득은 사업소득 혹은 기타소득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기타소득의 경우 업종정보를 신고하지 않음³⁾
 - 현행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은 일부 인적용역 업종에 국한되고, 해당 업종정보는 국세청에서 수집하는 자료에 의존하는바, 업종이 신고되지 않는 ‘기타소득’ 자료로는 인적용역 소득의 유형을 파악하기에 한계가 있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소득지급자가 원천징수이행의무를 지니고 있으면 소득세 납부를 위하여 수입금액의 3.3%를 원천징수하게 되며,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도 ‘사업소득’자이고 원칙적으로 종합소

3) 비거주자가 발생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경우, 거주지국과의 우리나라와의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국내 사업장 여부에 따라 종합과세 혹은 분리과세(선택가능)하게 되며 이때 분리과세 원천징수는 20%로, 거주자의 일반적인 기타 소득유형과 동일하게 부과됨(국세청, 「과세대상 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81&cntntslid=7917>, 검색일자: 2023. 12. 26.)

특세 신고 대상에 해당함

- 소득을 지급하지 않고 중개만 하는 경우, 혹은 소득을 지급했다 하더라도 개인 간 거래에서 발생하는 경우, 그러한 거래 중개인이나 개인 간 거래에서의 소득지급자는 원천징수이행의무를 지니지 않음
- 사업장을 제공한 경우(예를 들어, 플랫폼)도 소득지급의 정보를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어, 이 경우에는 과세당국이 사업장제공자를 통해 과세자료 제출의 의무를 부과하여,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소득을 파악하고 있음

○ 원천징수의무자에 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때 파악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사실상 ‘매출’ 개념이고, 경비를 제외한 ‘소득’ 개념은 아님

- 근로자와 비교할 때, 세액공제 등 조세지출의 혜택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 대비 근로자에 더 집중된 것은 맞지만, 과세표준이 정해지는 초기 단계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과도한 경비율이 적용되어 실질적인 결정세액이 낮게 산출됨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경비율 제도는, 사회보험공단에서 사회보험료 산정의 근거자료로 활용된다는 점에서 적지 않은 파급력을 지니며, 이 점에서 다음의 절에서 경비율 제도를 심도 있게 검토하고자 함

2. 경비율 제도 검토

- 국세통계연보를 사용하여 인적용역 사업자의 업종별 연간지급금액의 변동과 기준경비율 및 단순경비율의 변화 관계를 살펴보고, 이를 통해 경비율이 업종별 수입금액의 변화를 반영하는 정도를 살펴봄
 - 수입금액의 변화는 업종별 경제 상황의 변화를 대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인바, 업종별 수입금액의 변화와 경비율 변화의 방향에 일정한 관계가 나타날 것을 사전적으로 기대함

- 분석 결과 현재 설정된 경비율이 수입금액의 변화를 충분히 반영한다고 판단하기 어려움⁴⁾

○ 경비율 수준의 타당성을 근로소득자와의 형평성 측면에서도 검토함

-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근로소득공제율은 경비율과 동일하지는 않지만 유사한 개념이라 할 수 있음
- 비슷한 수준의 수입금액(총급여액)을 기준으로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과 근로소득자의 실효 근로소득공제율을 비교한 결과, 보험설계사 등을 제외하면 인적용역 사업자에게 적용되는 단순경비율의 수준이 높음

○ 또한 경비율 수준의 타당성을 근로장려금 제도의 소득 환산율과 비교하여 검토함

-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비율과 소득환산율의 차이는 다른 업종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것을 확인함
- 정책적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두 기준이 반드시 동일할 필요는 없지만 인적용역 사업자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지나치게 큰 간극이 발생함

○ 적정 수준의 경비율을 검토하기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설문조사 결과 현재 제도에서 시행하는 경비율 수준은 다소 높은 편임을 확인함

- 설문조사의 대상은 라이더, 택배 등의 인적용역 사업에 종사하는 자들임
- 이들의 평균 수입금액은 단순 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 구간에 속하며, 이들이 생각하는 적정 경비율 수준의 평균은 22.03%로 단순 경비율 수준보다 훨씬 낮으며, 기준 경비율 수준과 유사하거나 소폭 낮음

○ 지금까지의 논의를 종합하면 인적용역 사업자들에게 대한 단순 경비율의 조정 여력이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며, 경비율 산정과 관련한 보다 공개적인 논의의 장이 열리는 것이 향후 적정 수준의 경비율 결정에 중요할 것으로 판단됨

4) 다만, 수입금액만이 경비율 산정에 유일한 요소는 아님

03 사회보험 제도

-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해당 소득만 배타적으로 지닌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 부수입으로서 해당 소득을 발생시키고 있음
 - 고용형태가 다변화되는 과정에서 그러한 부수입의 발생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음
- 결국 사회보험 제도에서 이러한 고용형태 다변화를 탄력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음
- 특히, 근로자들이 인적용역 사업소득을 부수적으로 발생시킬 때 현행 사회보험 제도가 이를 반영하고 있는지를 검토한 결과, 한계가 적지 않음을 알 수 있었음
 - 고용보험의 경우, 인적용역 사업소득으로 인하여 노무제공자 고용보험에 근로자가 동시에 가입하지 않는다면 과세 대상이 되지 않음
 - 건강보험의 경우 소득월액이라는 형태로 보수금액 외의 소득을 반영하지만 한계가 있음
 - 2천만원이라는 기준이 존재하고, 경비율이 관대하기 때문에,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일반적 근로자의 건강보험료에 반영되는 경우는 적다고 할 수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아예 소득월액 제도도 없기 때문에 근로자의 추가 소득을 반영하는 채널 자체가 없음
- 이상의 논의는, 현행 사회보험 제도가 소득유형 및 소득발생 구조에 따라 상당히 비합리적일 수 있음을 함의함
 - 건강보험의 경우, 보험료와 수혜 간의 연계가 사실상 없다는 점에서 소득세와 유사하기 때문에, 과세형평성의 문제가 있음
 - 국민연금의 경우, 노후소득 측면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비중이 높은 근로자가 상대적으로 불리할 수 있음

04 조세·재정지원 제도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 대한 조세 및 재정 지원은 다음과 같음
 - 근로장려세제의 경우, 「근로기준법」에 부합하는 근로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므로 보험설계사 등을 포함한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에게 이미 적용된 바 있음
 -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업소득이 존재하는 근로장려세제 수급자 중에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 현행 근로장려세제에서는 업장제공자가 제출한 과세자료에 의해서 새롭게 포착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사업소득을 반영하고 있지는 않아, 이 부분이 반영되면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수급 비중이 늘어날 수 있음
 - 고용보험 급여, 산재보험 급여를 제외한 재정지원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두루누리 사회보험 제도, 국민내일배움카드 등이 있음
 - 각 제도별로 지원 혹은 우선지원 대상을 선별할 때 인적용역 사업자 여부도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로 포함되지만, 이러한 취업형태 외에도 소득과 자산

정보를 추가로 수급기준에 포함하는 것을 확인함
- 또한 지원에서의 기준 간 정합성 측면에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할 수 있었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의 부수입 성격을 고려할 때,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존재한다는 것만으로 수급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인적용역 사업소득이, ‘단독’으로 발생하기보다는 근로소득이나 진성 사업소득과 병행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취약계층 판별을 위해 합산소득 계산이 필요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만을 기준으로 취약계층 대상을 설정하는 경우, 집행 대상을 과대추정할 가능성이 있고, 그 결과 예산 집행률이 낮을 수 있음
- 합산소득을 수급조건에 포함한다면, 이미 ‘소득유형’이 중요한 의미가 없게 되는데, 오늘날의 고용형태 다변화 추세를 고려할 때 이러한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단, 인적용역 사업소득보다 근로소득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장려’하고자 하는 경우 등은 특정 소득유형 발생자를 우대할 수 있을 것임

05 소득파악 인프라

1.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개관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Real Time Information: RTI)는 사업자가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제도로써 인적용역 사업자, 일용근로자, 용역제공자 등에 대한 월별 소득자료 수집을 통해 고용보험, 재난지원금 등 다양한 복지행정에 사용됨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도입과 함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고용보험은 당연 적용되어 사회안전망 확충에 기여하고 있음

2.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 도입의 효과

- 본 연구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고용보험의 자발적 가입효과에 미친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산업 소분류별 고용보험 및 산재보험의 월별 피보험자수 변동

자료를 사용하여 분석함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시행과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시점이 매우 유사하여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만의 효과를 식별하는 데 어려움이 있지만, 일부 업종들의 경우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의 적용과 고용보험의 당연 적용 시점에 일부 차이가 있어, 이러한 변이를 활용하여 제도의 효과를 분석함
- 분석 결과,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변화에 미친 효과는 대략적으로 약 3~4%로 추정됨
 - 이는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자발적인 고용보험 가입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제시함
 - 실시간 소득파악 제도가 제도와 관련된 사업자들에게 행동 변화를 야기할 만한 시그널을 주었다고 판단되며, 고용보험 당연 적용 제도와 함께 사회안전망 제고를 위한 교두보를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음
 - 다만 동태적 이중차분법 등 다른 방법론을 적용하여 분석한 강건성 검토에서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아 보다 정직한 자료를 사용한 추가 분석의 필요성이 남아 있음

표 1 유형별 실시간 소득과약 인프라 구축의 내용

구분		내용	시행
일용근로자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분기 → 월)	2021년 7월
특고	인적용역 제공형(원천징수형) 및 프리랜서	사업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월)	2021년 7월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신설(매월 제출)	2024년 1월
	사업자 등록형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 1억원)	2023년 7월
		전자세금계산서 세액공제 신설	2022년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023년 1월
	플랫폼 종사자 및 기타	과세자료 제출주기 단축(연 → 월)	2021년 11월
과세자료 제출 대상에 '노무제공 플랫폼 사업자' 추가		2022년 1월	
상용근로자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반기 → 월)	2024년 1월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세액공제 신설	2023년 2월
자영업자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전년도 공급가액 2억원 → 1억원)	2023년 7월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 확대	2023년 1월

자료: 저자 작성

그림 2 인적용역 사업자 직종별 실시간 소득 과약 및 고용보험 적용 시점의 변이



자료: 저자 작성

06 나가는 글

- 기본적으로 소득세 과세제도, 사회보험료 부과체계, 정부 지원 정책은 소득파악 인프라를 기반으로, 소득 유형에 따라 발생하는 과세 및 부과상의 형평성을 성취하고, 취약한 인적용역 사업자를 적절히 선별하여 정부지원을 제공해야 함
-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와 관련된 과세·징수·지원 제도, 소득파악 인프라를 검토한 결과 다음의 정책 함의점을 도출함
 - (소득파악 인프라) △비원천징수 방식 과세자료의 질적·양적 개선, △현행 업종 기반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지원 등을 위해 인적용역 업종 세분화 지속 추진, △개인별 취업소득 합산체계 구축
 - (소득세) △과세당국 수집자료에 기반한 인적용역 사업소득자의 경비 파악 추진, △인적용역 업종 특성을 반영한 필요경비 인정범위 개선 등을 통해 경비율 제도를 개선, △인적용역형 기타소득 시 업종정보 신고 필요
 - (사회보험) 임금근로자의 사회보험료 부과 시, 인적용역 사업소득과 같은 '부수입'을 일정한 기준하에 반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 (지원정책) '인적용역 사업소득자'를 단일 취업형태로 간주하기보다는 개인 및 가구별 합산소득 기준으로 재정 지원을 제공

참고문헌

- 김문정·정다운, 『인적용역 사업자 과세제도 및 지원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23(발간예정).
- 국세청, 「과세대상 소득」,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6481&cntntsId=7917>, 검색일자: 2023. 12. 26.
- 통계청, 「가계금융복지조사」, https://kostat.go.kr/statDesc.es?act=view&mid=a10501010000&sttr_cd=S003003, 검색일자: 2023. 12. 10.